

의안번호	2200585
의 퇴 인	주철현의원
회 답 일	2024. 6. 13.
추계번호	24B0838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2 신설 (농수산물가격안정 제도)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 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 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<u>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[평균 가격(직전 5 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,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6 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 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 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(이하 “<u>농 수산물가격안정제도</u>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</u>	재량규정
2	안 제16조의3 신설 (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)	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농림축산식품부 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, 해양수산부에 수 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둔(제1항)</u> 1.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. 농수산물의 매입·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3. 적정 재배·양식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4.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(이하 “ <u>심의위원회</u> ”라 한다)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 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2 신설(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6조의3 신설(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)	- 미대상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현행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8조¹⁾에 따라 운영중인 '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'를 활용하여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 -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수산물 수급관리,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정책 등을 심의하는 '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'(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²⁾)를 활용하여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

2. 상세 사유: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(안 제16조의2 신설)

□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

- 1)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(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)
 -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.
 1.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 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
 3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~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- 2)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1.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
 2.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
 3.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
 4. 수산물 수급관리
 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,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, 즉 ‘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’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(농수산물 기준가격) 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),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한 가격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요 농수산물 지정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, 생산량, 지급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

- 추가재정소요 = $\sum_{i,t} (\text{주요 농수산물 품목 가격하락분 차액 지급액}_{i,t})$

$$= \sum_{i,t} [(\text{품목별 기준가격} - \text{품목별 시장가격})_{i,t} \times \text{품목별 생산량}_{i,t} \times \text{품목별 지급비율}_{i,t}]$$
 - 이때 (품목별 기준가격 - 품목별 시장가격) > 0인 경우에 해당
 - t는 추계기간 5년, i는 주요 농수산물 품목(쌀, 콩, 과일, 고등어, 갈치, 조기 등)

□ 그러나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보장대상 품목, 기준가격,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결을 거쳐 확정·고시하도록 규정하고, 특히 기준가격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³⁾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, 현시

3) 안 제16조의2(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[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,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(이하 “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1.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농수산물 품목
2.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및 기준가격
3. 농수산물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

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⁴⁾에 따라 2016년부터 ‘채소가격안정제’를 실시하고 있음
 - 농업인 또는 농협이 배추, 무 등 주요채소의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, 평년가격 대비 하락시 하락분의 일부 보전
 - ※ [참고자료]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참고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4)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) ① 시·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(需給)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(이하 “주산지”라 한다)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계약생산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, 지역축산업협동조합, 품목별·업종별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, 산립조합과 그 중앙회(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)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(이하 “생산자단체”라 한다)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제9조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 다만,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

[참고자료] 채소가격안정제 개요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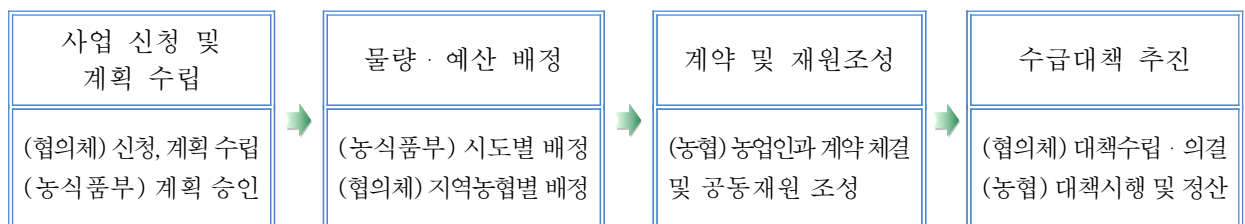
- (도입경과) 계약재배만으로는 농가의 소득안정 및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이 어려워 노지채소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

구분	'16년(시범)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신규 대상품목	배추 (여름, 겨울), 무(겨울)	배추·무 (全年형), 양파, 마늘	고 추, 대파	-	감자	-	-	-
예산(억원)	35	100	168	186	241	340	451	552

- (주요내용) 농업인 또는 농협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, 평년가격 대비 하락시는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

- (의무 사항)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물량의 50%까지 출하前 면적조절(생육단계 폐기), 출하정지, 출하조절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
 - (과잉시) 가입물량의 50%까지 출하前 면적조절, 출하정지, 출하시기 조절 등을 이행,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 방지
 - (부족시) 가입물량의 50%까지 출하시기 조절,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,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
- (지원 사항) 공동재원*을 활용해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** 지원하고, 평년 가격의 최대 80% 수준 보장
 - * 국고 30%, 지방비 30%, 농협 20%(경제지주 10, 사업농협 10), 농업인 20%
 - ** (출하前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) 소요된 생산비 수준, (출하조절) 운송비·작업비

- (추진체계) 지자체·농협·농업인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, 수급대책 수립·추진



<채소가격안정제 발동 사례>

가. 가격차 보전

- (보전방법) 당해연도 도매시장(가락시장) 거래가격이 5년 평년가격(기준가격)의 80% 수준(보전기준가격)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보전

.....	◀기준가격(A) : 가락시장 5개년 평년가격(가장 높은·가장 낮은 가격 제외)
.....	◀보전기준가격 : 기준가격(A)의 80%
보전금액	
.....	◀거래가격 : 가락시장 경락가격
.....	◀최저기준가격 : 기준가격(A)의 60%

- 보전산출방식: 거래가격(C)이 보전기준가격(B) 보다 하락할 경우 보전기준가격(B)과 거래가격(C)의 차액을 사업비에서 보전

- (보전사례) 제주 조생양파('22. 3월 하순~5월 상순, 8,541톤/420백만원)

(단위: 원/kg)

순기별	시장가격					보전기준 가격(80%)	최저기준 가격(60%)	차액 (보전단가)
	특	상	중	하	평균			
3월 하	618	393	256	160	303	794	595	199
4월 상	841	492	289	146	359	781	586	195
5월 상	666	551	478	335	484	577	433	93

※ 시장평균가격이 최저기준가격보다 낮더라도 보전기준가격과 최저기준가격 차액만 보전

나. 출하정지

- (보전방법) 가격하락 시 출하대기 포전을 확정 후, 가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전정리 및 손실보전
 - 보전금액: 보전기준액(기준가격 × 농업인수취율 - 출하비용) × 출하정지 면적
- (면적확정) 배정면적 이내 운용, 출하정지 면적 현지실사 실시(지자체 등)
- (보전사례) 전남 겨울배추('23. 1월 중순~2월 하순)
 - 대상면적(물량): 80ha(7,273톤), 지원단가 : 2,140원/㎡(7,065원/3.3㎡)

다. 출하장려

- 강원 고랭지 배추('22. 9월 상순, 위기단계: '심각')
 - * 배추 도매가격('22.8.29.~8.31.): 19,223원/10kg(상승심각)
 - * 배추 7~8월 평균: 14,403원
 - 대상물량 : 1,485톤(165대)/248백만원

< 출하장려금 지급내역(900망/대) >

운송비	작업비	상장수수료(50%)	합 계
450천원	450천원	606천원	1,506천원